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76호 2022. 4. 28.(목)

##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828호 사천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
- 사천시 조례 제1829호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
- 사천시 공고 제1830호 사천시 출자·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4
- 사천시 공고 제1831호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6
- 사천시 공고 제183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9
- 사천시 공고 제1833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4
- 사천시 공고 제1834호 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19
- 사천시 공고 제1835호 사천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20
- 사천시 공고 제1836호 사천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22
- 사천시 공고 제1837호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24
- 사천시 공고 제1838호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7
- 사천시 공고 제1839호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32
- 사천시 공고 제1840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38
- 사천시 공고 제1841호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39
- 사천시 공고 제1842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41
- 사천시 공고 제1843호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42
- 사천시 공고 제1844호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45

## 공 고

- 사천시 고시 제2022-611호 사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남부 소로3기호선)) 결정 입안 재열람 공고-48
- 사천시 고시 제2022-622호 중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수립 공고-49

##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2-610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55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천시 조례 제1828호

사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8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 를 “제15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84조” 로,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천시 조례 제1829호

사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8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 를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직원의 임면)” 을 “(직원의 임면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에 제2항에서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 채용계획을 시장과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협의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직원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에게 의뢰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시 산하 지방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일괄적으로 직원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중전의 제10호) 중 “제9호”를 “제11호”로 한다.

10.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

11.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천시 조례 제1830호

사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8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채용)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 채용계획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에 의뢰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시 산하 지방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일괄적으로 직원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괄하는 부서장”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성과”를 각각 “성과계약”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로, “경영지도법인”을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천시 조례 제1830호

사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8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활동결과 공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천시 조례 제1832호

사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등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8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을 “「지방자치  
법」 제150조제1항” 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제2조(「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34조제2항”을 각각 “영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4조(「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5조(「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개정) 사천시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6조(「사천시 주민투표조례」의 개정)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8조(「사천시 사무위임조례」의 개정)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9조(「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10조(「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2조(「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3조(「사천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제14조(「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제15조(「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6조(「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의 개정)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을 “「지방자치법」 제153조”로 한다.

제18조(「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의 개정)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19조(「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의 개정)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3조·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천시 조례 제1833호

사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8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4.28.>

## 출산장려시책 지원(제4조제1호 관련)

지원내용	상세내역
임신축하용품	○ 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임신부 등록한 자를 대상 임신축하용품 지급
출산지원금	○ 첫째 아: 100만원 -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 둘째 아: 200만원 -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 셋째 아 이상: 600만원 - 출산 후 신청서 제출 시: 2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12개월) 되었을 때: 1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2년(24개월) 되었을 때: 1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3년(36개월) 되었을 때: 1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4년(48개월) 되었을 때: 100만원 ○ 첫만남이용권(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출산축하용품	○ 시 관내 출생신고자 대상 출산축하용품 지급 ○ 아기 탄생 축하메시지 게시자를 대상으로 출산축하용품(상품권을 포함한다)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 모유수유 유촉기 대여: 대여기간 2개월
출생아 복지보험료	○ 시와 협약한 업체에 가입되며, 5년간 보험료(3만원 이내)를 지원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 지원 등	○ 시의 출산장려 시책 및 계획에 따라 지원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지원	○ 시와 협약한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3만원 이하의 물품(상품권을 포함한다) 지원
우대인증	○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유효기간 5년, 분실·훼손 시 재발급 가능) - 실내수영장 이용료: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기준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사천시 주최·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무료
쓰레기봉투 지원	○ 둘째 이상의 출생아 한 명당 400리터 지원 단, 다태아인 경우 첫째 출생아에게도 400리터 지원
수도요금 감면	○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도 요금 감면



[별표 2] <개정 2022.4.28.>

### **전입시책 지원(제4조제2호 관련)**

지원내용	지 원 기 준
우대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유효기간 5년, 분실·훼손시 재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수영장 이용료 :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50퍼센트 할인</li> <li>-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최·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 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할인</li> <li>-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li> <li>-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li> <li>-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무료</li> </ul> </li> </ul>
쓰레기봉투 지원	○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연 50만원(학기별 25만원) 지원(재학생에 한정)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집전화	
				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집전화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에 [ ]아니오
	배우자			[ ]에 [ ]아니오	
	자			[ ]에 [ ]아니오	
	자			[ ]에 [ ]아니오	

사천시 자체 서비스	[ ] 출산 지원금	[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이상 자녀(이름: )
	[ ] 출산축하용품	[ ] 아기용품세트 [ ] 쓰레기봉투(단, 둘째 자녀 이상) / 둘째 자녀 이상(이름: )
	[ ] 우대인증	가구원 성명( )
	[ ] 셋째 이상 출생아 복지 보험	[ ] 셋째 이상 자녀(이름: ) ※ 보험료 지원기간(5년) 내 타 지역으로 전출시 지원 자격 상실됨
	[ ] 유숙기 대여	※ 당일 예약제로 운영되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보건소 모자보건실(831-3527)로 문의
	[ ] 수도요금 감면	[ ] 셋째 자녀 이상 (이름: ) 수용가명 : 수용가번호 : 감면세대주 성명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첫만남이용권(2022.1.1. 이후 출생자)
	영아수당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아동수당	[ ]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BC카드( 은행)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 표를 하고, <b>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b> 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K기업, N농협, S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한)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사천시 장 귀하

<b>신청인 제출서류</b>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b>담당공무원 확인사항</b>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b>참고사항</b>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당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 가구 또는 출산가구에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시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센터,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영아수당(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호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영아수당(현금)급여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대리신청인)	➔	접수 읍·면·동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천시 조례 제1834호

사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8일

##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사천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천시 조례 제1835호

사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8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증진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사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왕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운영·관리하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는 문화·예술·체육·문화재 시설과 고려현종대왕축제 등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셔틀버스의 노선 및 운행범위는 문화시설 등의 위치, 성격 및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이용 대상자) 셔틀버스 이용 대상자는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천시 조례 제1836호

사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8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 사천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재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지킴이”란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재지킴이 활동”이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제5호에서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지원” 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 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관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재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시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천시 조례 제1837호

사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8일

##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정의는 법률 제2조의 정의” 를 “뜻은 법 제2조” 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 행정절차법 · 제46조” 를 “「행정절차법」 제46조”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을 “「엔지니어링산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업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4.28.>

## 가축사육제한구역(제3조 관련)

### 1. 전부제한구역

- 가. 주거밀집지역의 인가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취락지구
-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라.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마.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2. 일부제한구역

- 주거밀집지역의 인가로부터 다음 각 목의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가. 소: 150m

나. 젖소: 250m

다. 돼지, 개, 가금류(닭, 오리 등): 1,000m

라. 그 밖의 말, 사슴, 양, 염소 등은 “소”의 제한거리 규정을 따름

#### ※ 적용기준

가. “제한거리”는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상 거리로 산정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천시 조례 제1838호

사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8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천시 민원 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나.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근로자

다.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라. 「사천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 장비 등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보호조치)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받은 경우 휴식 및 업무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4. 법률상담 및 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22.4.28.>

## 지원기준 (제5조제2항 관련)

지원 구분	근거	지원한도	세부기준
심리상담	제5조제1항 제1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	제5조제1항 제2호	100만원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5조제1항 제3호	2시간	심적 고충이 클 경우 연장 가능
법률상담	제5조제1항 제4호		‘민원응대 공무원 법률 상담 서비스’ 연계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5조제1항 제5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그 밖의 사업	제5조제1항 제6호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	제8조	예산의 범위 내	

##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 보호 지원 신청서

발생일			부서명	
신청자	직급		연락처	
	성명	(남/여)		
민원내용	민원명			
	민원요지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		
피해내용	○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지원신청내용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input type="checkbox"/> 1호(심리상담) <input type="checkbox"/> 2호(의료비) <input type="checkbox"/> 3호(휴식시간) <input type="checkbox"/> 4호(법률상담) <input type="checkbox"/> 5호(교육 및 연수) <input type="checkbox"/> 6호(그 밖의 사업: ) ※ 2호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증빙자료	○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천시 조례 제1839호

사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8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 사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사천시의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본부장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

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③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본부장은 평가단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 및 평가단원으로 본다.

[별지 서식] <개정 2022.4.28.>

< 앞 >

<b>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b>	
성 명:	사 진
소 속:	
주 소: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b>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b>	

120mm×90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55-831-33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b>

120mm×90mm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천시 조례 제1840호

사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8일

##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를 “제1항에도” 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 를 “수수료” 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별표 6 제2호나목의 과태료란 중 “11일째부터” 를 “31일째부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천시 조례 제1841호

사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8일

##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민들” 을 “사천시민” 으로, “생활 할” 을 “생활할” 로, “적용 하는데” 를 “적용하는데”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민” 을 “사천시민”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4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범죄 취약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범죄 취약계층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천시 조례 제1842호

사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8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띄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천시 조례 제1843호

사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  
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8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  
위·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3. “전문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

4. “임업인 등”이란 제1호의 “임업인”, 제2호의 “산림관련단체” 및 제3호의 “전문임업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와 지위·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수 있다. 다만, 사천시에 주소를 둔 자 이어야 하며,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사업
  2.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
  3. 임산물 재배지 경영 및 관리 지원사업
  4. 임업용 기계 및 장비 지원사업
  5. 전문임업인 육성 및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지원사업
  6.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전국대회 등)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법 등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천시 조례 제1844호

사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8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를 “사천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시가” 를 “사천시가” 로, “교복 지원에 관한” 을 “교복구입비 지원에”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각 호와” 를 “다음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학교” 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제5호의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관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 또는 교복 이외의 일상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으로 한다.
- ② 제1항에서 시장이 정한 기준일은 매년 각급 학교 신입생 입학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생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전입생에 대한 지원은 전입학일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경상남도 내의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으로 최초 전입학 1회만 지원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읍·면·동장 또는 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제출한다”를 “읍·면·동장은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로 한다.

-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온라인(경상남도 누리집)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천시 공고 제2022-611호

## 사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남부 소로3-가호선)] 결정 입안 재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남부 소로 3-가호선)] 결정 입안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재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7일

사 천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가.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결정

#### 1)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가	7.5	국지 도로	570	와룡동 210-3	와룡동 228-3	일반 도로	-	-	

#### 2)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가호선	· 도로신설 -폭원: 7.5m -연장: 570.0m	·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의 노폭협소로 인한 통행불편 및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노폭 확장하여 도로 신설결정하고자 함

2.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사천시청 도시과 및 도로과

4.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열람장소 비치)

5. 관계도면 : 게재생략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과(055-831-3177) 또는 도로과(055-831-2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천시 공고 제2022-622호

## 중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수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중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28.

## 사 천 시 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나. 명 칭: 중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사천시장(재난안전과장)
- 나. 주 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가. 위 치: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08-21번지 일원
- 나. 사업규모: 도로 승상 L=235m, 월류보호공 L=287m 등

### 4.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 수 일: 2021. 7. 22.
- 나. 준공예정일: 2023. 6. 30.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참조
6. 열람기간 및 장소(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
  -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나. 열람장소: 사천시청 재난안전과 비치
7.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 재난안전과(055-831-3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m <sup>2</sup> )	편입 면적(m <sup>2</sup>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23필지		18,337 9,647	6,551 6,811						
1	서포면 자혜리	911-12	도	217 217	113 113	사천시					
2	서포면 자혜리	911-7	대	38 38	38 38	국	기획재정부				
3	서포면 자혜리	911-8	대	13 13	13 13	국	기획재정부				
4	서포면 자혜리	911-9	대	16 16	16 16	국	기획재정부				
5	서포면 자혜리	911-10	전	227 227	227 227	국	기획재정부				
6	서포면 자혜리	908-12	잡	45 45	45 45	국	국토교통부				
7	서포면 자혜리	908-21	도	4,580 4,580	1,876 1,876	국	국토교통부				
8	서포면 자혜리	908-13	임	246 246	218 246	국	기획재정부				
9	서포면 자혜리	908-26	잡	949 949	631 631	사천시					
10	서포면 자혜리	산153-7	도	514 514	7 7	사천시					
11	서포면 자혜리	911-1	전	97 97	97 97	사천시					
12	서포면 자혜리	911-4	대	124 124	124 124	사천시					
13	서포면 자혜리	911-5	대	118 118	118 118	사천시					
14	서포면 자혜리	911-2	전	174 174	174 174	사천시					
15	서포면 자혜리	911-11	전	329 329	329 329	박 * 덕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 * * - *				
16	서포면 자혜리	911-6 911-14	전	814 692	690 692	박 * 덕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 * *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m <sup>2</sup> )	편입 면적(m <sup>2</sup>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	서포면 자혜리	산154	임	8,926	128	허*환  윤*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73길 * * -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97번 길 * *				
		산154-1		19	19	사천시					
18	서포면 자혜리	산154-2	임	- 106	- 106	사천시					
19	서포면 자혜리	산154-3	임	- 233	- 233	사천시					
20	서포면 자혜리	908-14	대	264 264	264 264	국	기획재정부				
21	서포면 자혜리	908-15	대	31 31	31 31	국	기획재정부				
22	서포면 자혜리	908-2	대	347 347	347 347	사천시					
23	서포면 자혜리	공유수면	-	- -	962 962	- -					
24	서포면 자혜리	908-22	제	173 173	8 8	국	해양수산부				
25	서포면 자혜리	908-16	대	95 95	95 95	국	기획재정부				

나. 사용하거나 수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단위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서포면 자혜리	911-11	주택	조립식	36.7	m <sup>2</sup>	박*덕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				
.	.	.	담장	블록	16.4	m <sup>2</sup>						
.	.	.	바닥	콘크리트 (1.5*9)	13.5	m <sup>2</sup>						
.	.	.	보일러실	조립식	3.6	m <sup>2</sup>						
.	.	.	물탱크	FRP (받침대포함)	1	식						
.	.	.	수도	.	1	식						
.	.	.	축사	철골강판	20	m <sup>2</sup>						
.	.	.	축사	블럭강판	20	m <sup>2</sup>						
2	서포면 자혜리	911-6	감나무	R20	4	주	박*덕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				
.	.	.	유자나무	R20	1	주						
.	.	.	자두나무	R20	1	주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서부 소로 2-109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내용  
-중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08-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서부 소로2-109호선)사업

나. 명 칭 : 중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 A= 6,811m<sup>2</sup>

나. 규 모 : 도로 승상 L=235.0m, B=7.0~9.5m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사천시장(재난안전과장)

나.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나. 준공예정일 : 2023.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수립공고에 따른 토지조서 참조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천시 공고 제2022-610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1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4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1건 입법예고

## 1. 자치법규명

- 가.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나.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 개정이유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대한 예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 나.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기준을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조례」의 쓰레기봉투 지원 내용과 일치시켜 자치법규 간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①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 ②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나.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기준 일부 변경(안 제14조)

##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

(우편번호 : 52564, 주소 : 사천시 환경길 55, 전화 : 831-5602, FAX : 831- 6064)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4. .

제 출 자: 환경사업소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대한 예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 19조의2)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4. . ~ 2022. 5.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1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야간에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출근시간대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리프트, 집게 등 기계식 상차장치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상차하는 경우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라. 생활폐기물 상차작업이 완료된 적환 및 운반 전용차량이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가로·도로 청소차량으로서 운전자가 기계식으로 청소하는 차량

바. 지게차, 로더 등으로서 사업장 내 운용차량과 소형 수집·운반차량, 이륜차, 삼륜차로서 3명이 탑승하기 어려운 경우

사. 감염병 등의 사유로 작업자가 부족할 경우

아. 그 밖에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제1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1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제3호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야간에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2em;">가. 출근시간대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2em;">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p> <p style="padding-left: 2em;">다.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2em;">라. 그 밖에 생활폐기물을 시급</p>

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  
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2명 이  
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  
고 인정하는 경우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  
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 포  
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리프트, 집게 등 기계식 상  
차장치를 이용하여 생활폐기  
물을 상차하는 경우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생활  
폐기물 처리 기동차량을 운  
행하는 경우

라. 생활폐기물 상차작업이 완  
료된 적환 및 운반 전용차량  
이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  
는 경우

마. 가로·도로 청소차량으로서  
운전자가 기계식으로 청소하  
는 차량

바. 지게차, 로더 등으로서 사업  
장 내 운용차량과 소형 수집·  
운반차량, 이륜차, 삼륜차로  
서 3명이 탑승하기 어려운  
경우



사. 감염병 등의 사유로 작업자  
가 부족할 경우

아. 그 밖에 생활폐기물을 시급  
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  
우

## 관 련 법 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4. .

제 출 자: 환경사업소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기준을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쓰레기봉투 지원 내용과 일치시켜 자치법규 간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기준 일부 변경(안 제14조)

- 가구당 매월 120리터(1인 가구는 매월 60리터)

→ (출산장려시책): 둘째 이상의 출생아 한 명당 400리터

단, 다태아인 경우 첫째 출생아에게도 400리터

→ (전입시책):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4. . ~ 2022. 5.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 사 천 시 공 보

제776호

사천시 규칙 제 호

##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사천시” 를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33조에 따라” 를 “제3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의 무료지급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를 “조례 제33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제공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무료지급조서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① (생 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u>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시간별로 배출 및 수거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 ----- -----.</p>
<p>제4조(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 ① (생 략)</p> <p>② 배출자는 제1항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u>사천시</u>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 ⑥ (생 략)</p>	<p>제4조(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사천시</u>(이하 “시”라 한다) --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14조(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① 조례 <u>제33조에 따라</u>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단,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제공한다), <u>별지 제18호서식의 무료지급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u> &lt;후단 신설&gt;</p>	<p>제14조(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① -- <u>제3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u> ----- ----- ----- --- <u>조례 제33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u> 쓰레기봉투를 제공한다. <u>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무료지급조서를 작성·관리</u></p>

② · ③ (생략)

해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관 련 법 규

### □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3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급을 받는 사람<개정 2016.11.28.>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개정 2016.11.28.>

###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내용)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9.23.>

1. 별표 1의 출산장려시책 지원
2. 별표 2의 전입시책 지원<개정 2020.6.30.>
3. 그 밖에 시장이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